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1. 제안경위

- 제안자 : 김윤정 의원 외 8인
- 발의일 : 2018. 04. 03.
- 회부일 : 2018. 04. 05. (의안번호 : 18-33)

2. 제안이유

우리구 청년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지원을 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청년 정책추진 환경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 : 제4조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제6조
-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 제8조
-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지원 등 : 제9~13조
-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단체 지원 : 제16조, 제1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발전 기본법 등
- 예산조치 : 향후 조치필요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 시행관련, 규제·부과·갈등·성별 등 분야별 사전 영향평가 협의사항의 경우 해당내용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여부 : 필요함

- 청년의 실업문제 해소와 청년의 기본적 인권 등의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체계적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임
- 또한, 서울시 12개 자치구와 지방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우리구의 “청년 기본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상위법령 위임여부 및 지방자치 사무여부 : 적정함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등 상위법령에 청년복지에 대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기타 사항의 경우도 법령상 위임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역 복지 차원의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구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발전 기본법(안)
연령	15~29세	39세 이하	15~29세	19~39세

다. 조문구성 체계 등 적정여부 : 적정함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청년복지 시책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부칙 등의 조문이 조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조문의 용어 및 문장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게 구성되어 있음

라.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여부 : 적정함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네트워크 구성, 청년시설의 설치, 청년의 고용확대, 청년단체 지원, 표창 등 우리구 수준에서 실현가능한 청년복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확보 및 시행 준비를 위해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음(중앙정부 “일자리 대책” 추경예산확보)

마. 검토 종합의견

청년실업 증가와 심각한 청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의 고용확대, 능력개발, 참여확대, 권리보호 등 청년의 기본적인 지원과 시책을 담고 있는 이건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금번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일부 위임 근거가 있고 청년복지가 지방자치 고유사무라고 판단되는 것은 물론 조문구성 체계 등을 볼 때 문제가 없다 하겠음.

또한, 조례 제정·공포후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칙에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 명문화 하였음.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2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서울특별시 12개 타 자치구는 물론 지방의 기초 지방 자치단체 또한 이미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한 사례가 있음

아울러, 2018.4.3일부터 4.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윤정 의원님 대표발의와 복지 도시위원회 8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구청장은 조례 제정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실 있는 청년복지가 실현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참고자료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참고자료]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